

무형문화유산법 관련 기예능협회 최종협의 결과 보고

구 분	현행법	당초안	최종협의안	비고
무형문화유산의 범위	기능, 예능	○ 전통적 공연·예술 ○ 공예,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○ 한의약, 농경·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○ 구전 전통 및 표현 ○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○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(儀式) ○ 전통적 놀이·축제 및 기예·무예	좌 동	
보전 및 진흥 원칙	원형유지	○ 원형→전형(典型)으로 변경 ○ 민족정체성 함양 ○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○ 무형문화유산의 가치구현과 향상	좌 동	
전승체계	보유자, 보유단체, 전수교육조교, 이수자, 명예보유자	보유단체 내부 보유자 불인정 전수교육조교→전승교수 변경	보유자→전승교수 명칭변경 보유단체→전승단체 명칭변경 명예보유자→명예전승교수 명칭변경 전수교육조교 명칭 현행유지 전승단체 내부 전승교수 인정 ※개인종목 전수조교 신규충원 지양	임돈희 위원장 제안→ 기예능협회 설명 후 수용 개인종목 현행 전수조교 점차 전승교수로 충원
전수교육권	보유자, 보유단체	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수	전승교수, 전승단체	전수교육조교 역할 현행 유지(전승교수 보조)
정년제 도입	별도 규정 없음	만 80세까지 인정	정기조사, 모니터링 강화 기량확인 후 전승교수, 전수조교 해제	해제조항 강화, 신설
이수증 발급심사 주체	보유자, 보유단체	문화재청장	좌 동	실기 전문가 심사 참여
대학을 통한 전수교육	도제식 전수교육	대학을 통한 전수교육제도 추가	좌 동	전승자 희망종목 위주로 선정
인간문화재 명칭 법정화	없 음	보유자, 명예보유자, 전승교수	전승교수, 명예전승교수	예우조항 신설